#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32 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황정아·장철민·박용갑

박정현 · 조승래 · 박해철

박지원 · 허성무 · 김 윤

황명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·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,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 간의 이 해관계가 달라,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 임대주택 전환 등 특별법의 주요 지원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으나,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

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의 선구제,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, 최근 신촌 일대에서 90억원대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끊임없는 발생하 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차보증금 선구제,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,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제25조제1항 후단 신설,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,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).

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청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신청)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 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임 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통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27조의3(채권매입기관) ① 제27조의2의 신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채권매입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 한다.

- 1. 주택도시보증공사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매입기관
- ② 채권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- 1.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
- 2.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임대인에 대한 제3자 의 선순위 채권의 매입
- 3.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의 추심 및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4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및 매각(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다)
- 5.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차의 관리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③ 채권매입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7조의4(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) ①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을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의 채권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전세사기피해자가 선택하거나 채권매입기관과 합의할 수 있다.
  - 1. 채권 매매 시점의 채권 평가액으로 채권매매대금을 산정하여 매매 시점에 전액 지급하는 방법
  - 2.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

하고 이 조부터 제27조의7까지의 절차를 거쳐 회수된 금액에서 먼저 지급한 채권매매대금, 제 비용 및 채권매입기관의 적정 수익을 공제한 후 나머지 채권매매대금을 사후정산하는 방법.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채권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정한 가치평가에 의한 예상매매대금을 설명하여야 한다.

- ③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임대인에 대한 제 3자의 선순위 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(그 선순위 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제 비용 및 적정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을 제1항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평가금액에 가산하 여 제2항의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.
- ④ 채권매입기관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권리관계 조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 공공매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조사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채권매입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.
- 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경매나 공매 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6조에따라 주택의 환가를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매각될 때까지 전

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.

- 제27조의5(우선매수권의 양도, 우선변제권 등) ①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매입기관에 매각한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매입기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.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「민사집행법」 제113조, 「국세징수법」 제71조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우 선변제권을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한 채권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.
  - ③ 채권매입기관이 제27조의4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한 특례는 채권매입기관에 준용한다. 이 경우제23조 및 제24조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채권매입기관으로 보고,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제23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분적용 신청을 한 경우 채권매입기관이신청한 것으로 본다.
- 제27조의6(주택매입) ① 채권매입기관은 제27조의4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그 투입 비용의 환수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방법

- 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 496조에 따라 주택의 환가의 방법으로 하는 매각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② 채권매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적정한 시가에 매각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다.
- ③ 채권매입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던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이 매각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에 임 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 4조제1항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27조의7(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의 매각) ① 제27조의6제2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절차 개시 전에 채권 매입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사 업자인 지방공기업에게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목록과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전세사기피해 자가 제27조의6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 우 채권매입기관이 제시하는 신청 기간 동안 채권매입기관을 통하 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

매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겠다고 채권매입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제27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, 매각절차와 방법에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의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 용도로 매입하는 때에는 그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 19425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	제25조(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
기피해주택 매입) ① 전세사기	기피해주택 매입) ①
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	
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	
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.	
<u>&lt;</u> 후단 신설>	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
	청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
	해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
	<u>한다.</u>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2(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
	매입신청) 전세사기피해주택의
	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
	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
	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
	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
	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하여 자
	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
	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
	<u>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3(채권매입기관) ① 제27
	조의2의 신청에 따라 임차보증
	금반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

- 기관(이하 "채권매입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기관으로 한다.
- 1. 주택도시보증공사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매입기관
- ② 채권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- 1.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
- 2.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임대인에 대한제3자의 선순위 채권의 매입
- 3.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의 추심 및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업무
- 4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및 매각(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다)
- 5.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차의 관리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
- ③ 채권매입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

<u><신 설></u>

<u>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</u> 있다.

제27조의4(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) ①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을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수 있다.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채권 매매대금 산 정 및 지급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전세사기피해자가 선택하거나 채권매입기관과 합 의할 수 있다.
- 1. 채권 매매 시점의 채권 평가 액으로 채권매매대금을 산정 하여 매매 시점에 전액 지급 하는 방법
- 2.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의 일부를 먼

전 지급하고 이 조부터 제27 조의7까지의 절차를 거쳐 회 수된 금액에서 먼저 지급한 채권매매대금, 제 비용 및 채 권매입기관의 적정 수익을 공 제한 후 나머지 채권매매대금 을 사후정산하는 방법. 이 경 우 채권매입기관은 채권매매 계약 체결 당시 공정한 가치 평가에 의한 예상매매대금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앞서는 임대인에 대한 제3자의 선순위 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(그 선순위 채권 의 회수금액에서 제 비용 및 적정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을 제1항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평가금액에 가산하 여 제2항의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.

④ 채권매입기관의 전세사기피 해주택에 관한 권리관계 조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

장관은 채권 공공매입에 필요 한 범위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조사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 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 고 그 수집된 정보를 채권매입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 우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제13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 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.

- 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에 관한 사항과 매입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- ⑥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경매나 공매 또는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6조에 따라 주택의 환가를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매각될 때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.

제27조의5(우선매수권의 양도, 우 선변제권 등) ① 전세사기피해 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 권매입기관에 매각한 경우 제2 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

<신 설>

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채 권매입기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. 이 경우 채권매입기 관은 「민사집행법」 제113조, 「국세징수법」 제71조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6조에 따 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.

- ② 이 법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한 채권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.
- ③ 채권매입기관이 제27조의4 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한 특례는 채권매입기관에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채 권매입기관으로 보고,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을 양도하기 전에 제23조제3항

<u><신 설></u>

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채권매입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. 제27조의6(주택매입) ① 채권매입 기관은 제27조의4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그 투입 비용의 환수를 위하여 전세사 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손실 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배당 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전세

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방법은

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

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

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또는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

법률 시496조에 따라 주택의

환가의 방법으로 하는 매각절

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 한

한다.
② 채권매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적정한 시가에 매각하여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.
③ 채권매입기관이 제1항에 따

<u><신 설></u>

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던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매각될 때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4조제 1항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7조의7(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의 매각) ① 제27조의6제2항에 따른 전 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절차 개시 전에 채권매입기관은 한 국토지주택공사 및 해당 지역 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에게 매입한 전세사 기피해주택의 목록과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제27조의6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이 제시하는 신청 기간 동안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 후 제2조(유효기간) -----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채권매입기관을 통하여 공공주 택사업자에게 해당 전세사기피 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 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용도 로 매입하겠다고 채권매입기관 에 요청하는 경우 제27조의6제 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기 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, 매각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의 경우에 공공주택사 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 공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는 때에는 그 주택의 전세사기피 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.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4년----